

## 2012년 인신매매보고서

### 대한민국(1 등급)

대한민국(한국)은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송출국, 경유국, 목적국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 일본,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남성과 여성 중 일부는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일부 여성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E-6 연예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강제 성매매의 대상이 됐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서 모집된 여성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 혹은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경우에 강제 성매매 혹은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된다. 한국인 여성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포함한 해외와 국내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채무로 인해 인신매매법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국내 십대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 노예로 전락할 취약성이 높아진다. 국내에는 아시아 각지에서 유입된 미숙련 이주노동자 50 여 만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체불당하고 여권을 빼앗기며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본국에서 제안받은 직무와 상이한 작업에 투입되는 등 강제 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 유죄 확정 건수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근로자 인신매매법을 사법 처리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보고 대상 기간에는 그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서비스에 위탁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센터보다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센터의 수가 더 많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 관련 인신매매에 연루된 범죄자를 포함하여 인신매매법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유죄를 확정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과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공식적인 피해자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 체불을 신고한 경우처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강제 노동 피해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3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성매매 인신매매 실태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 인신매매 범죄의 범위와 유무를 조사하는 연구나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인신매매법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사전예방적으로 취업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내국인을 사법 처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법 처리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법을 기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유형을 불문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그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지장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위반자에게 각각 10년 이하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2004년 제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대다수 유형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며 강간 등 다른 중범죄의 형량과도 비례한다. 정부는 인신매매법을 기소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유괴 범죄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다른 형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을 근거로 전년도의 40 명보다 증가한 53 명의 인신매매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법률을 근거로 전년도의 6 명보다 증가한 총 11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게는 16 개월에서 5 년의 형량이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실제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2011 년 4 월 이래로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저임금·무임금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고 대상 기간 종료 시점에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인권위원회는 한국 어선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한 해 동안 34 회의 조사를 실시하고 8 명을 기소했지만 직전 수 년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근로자 인신매매범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현행 법률 구조가 근로자 인신매매를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 년 6 월에 한국 당국은 보고 대상 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 인신매매범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직전 5 년간 아동 성매매나 근로자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2011 년 4 월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탈북자 여성 70 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40 세의 탈북자 여성과 공범 3 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에게 32,139 달러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 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켰으며 수사 당국은 중국 내 집창촌이 인신매매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쉼터와 상담, 교육, 한국 시민권이 제공됐다. 40 세의 탈북자 여성은 감형을 조건으로 상업적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으며 1,800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납부했다. 보고 대상 기간 종료일 현재 나머지 3 명의 피의자에 대한 법정 심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274 명의 신임 검사와 성매매 사건 전담 검사들을 대상으로 여성 및 아동 성매매 수사 교육을 재정 지원했다.

## 피해자 보호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확고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공식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정부 내 피해자 파악 절차는 부재했다. 인신매매 피해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성매매 피해자에 비해 부족했다. 정부는 15 명의 성매매 피해자를 파악했다. 인신매매 피해 근로자가 몇 명이나 파악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정부는 경찰, 사회복지사, 근로·보건 공무원 등 일선 현장 인력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지원 서비스에 위탁하는 요령을 지도하는 공식적인 장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2011 년에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를 위해 주로 쉼터, 상담, 의료·법률 지원,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의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약 1,690 만 달러를 집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18 곳의 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전용 쉼터를 계속해서 운영했으나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이 시설을 이용한 피해자의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인 외국인 신부와 가출 청소년을 돕는 상담센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상담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 자문, 의료 서비스 및 쉼터 위탁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강제 노동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남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운영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동이나 법적 지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국 송환을 대신하는 법률적 대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G-1 비자 제도를 통해 임시로 송환을 면제받고 한국에 머물면서 최장 1 년간 인신매매범 수사에 협조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G-1 비자가 발급된 인신매매 피해자 3 명이 근로자로서 체류하고 있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예방 노력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직전 해와 마찬가지로 거의 성매매에만 집중됐다. 정부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신부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 절차에 안전 장치를 추가할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계획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출신국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버스, 전광판, 전철, 외국어 간행물 매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 상담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이 응대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핫라인을 홍보했다. 여성가족부는 잠재적인 성매매 고객을 계도할 목적으로 1,500 개 공공기관에 성매매 방지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캠페인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상업적 성 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성매매 남성 '고객'을 형사 처벌하는 대신 하루 일정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39 개 '존 스쿨'을 운영했다. 정부는 성매매 방지법(2008년 개정)의 일환으로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에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1년 초에 발표했다. 한국 당국은 사법 공무원과 기타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강제 성매매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 남성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 지역에서 행해지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수요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TV 광고를 방영했으며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한 경고문을 게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항과 여행사를 통해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다. 직전 5년간 아동 성매매 관광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한국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에 인신매매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